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교육

진도군노인요양원

노인권리보호란?

- ◆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서 노후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 인권보호 관련 규정

노인복지법	· 2조(기본이념) · 39조의 4내지 9[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원 선임, 금지행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 37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가능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 44개의 평가항목 - 건강권, 주거권, 인간존엄권과 경제 · 노동권, 문화생활권, 교류 · 소통권, 자기결정권 관련사항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 비밀보장, 정보제공,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참정권보장, 신체적 제한 최소화, 자치활동, 시설환경의 안전성 등 명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①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과 윤리강령 ②시설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개입결정 ③시설생활노인의 위험 및 안전관리지침으로 구성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명시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돌봄(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 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을 권리
-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 시설 내 · 외부에서 개인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 시설 입 ·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보호

1) 자유권

- 신체자유권 [강제노동, 강제격리]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입퇴소 결정권, 입소 시 시설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들을 권리, 통신수단의 접근권 등]
- 정신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수입 및 자산 관리에 관한 권리, 개인물품을 갖고 올 권리, 시설 내 프로그램 참여결정 및 선택 권한 권리, 종교활동 참여]

2) 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개별화된 식사서비스, 깨끗한 의복 및 침구류 제공, 사생활 존중, 적절한 의료서비스 충분한 수발서비스 제공, 심리적 질적 서비스 제공]
- 정서적 지원 [언어 사용 유의, 목욕, 기저귀 케어 시 신체노출 주의, 생활 어르신 간 통합]

노인학대의 정의 및 특성

◆ 노인학대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 언어적 · 정서적 · 성적 ·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 및 자기방임

◆ 특성

1.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2.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3.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4.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노인학대 유형[신체적 학대]

-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 EX) 폭행, 이동하지 못하도록 가두거나 통제, 신체 억압 강제노동,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 투입 등



노인학대 유형[정서적 학대]

- ▶ 학대 행위자에 의하여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
- ▶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 ▶ EX) 노인과의 접촉 기피, 노인의 사회 관계 방해, 의사결정 소외, 무시하는 언어, 욕설, 반말, 협박 등



노인학대 유형[성적 학대]

-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EX)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진행되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등



노인학대 유형[경제적 학대]

-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 ▶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 EX) 통장 갈취, 재산 사용 통제 등



노인학대 유형[방임, 자기방임]

-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EX) 보호 및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일상생활, 의료 등]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노인학대 유형[유기]

-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EX)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시설, 병원 입소 후 연락이 두절된다.



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가 없다.
2.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기
3. 경제적인 능력 유지
4. 사회적 관계에 관심 갖고 참여
5. 가정의 화목을 위한 노력
6. **학대받는 경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 39조 62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방서의 구급대원 등

◆ 처벌 규정 강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강화되었음

노인학대 처벌규정

법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 행, 성희롱 등의 행위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 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 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

112 또는
119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1. **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 : 사무국장 / 시설장 보고 및 1577-1389 전화
2. **조사와 사정** :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공동 현장 조사 실시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4. **평가** : 어르신 안전보호조치, 신체 / 심리적 회복 지원, 학대 재발 가능성 평가
5. **사후조치** : 인사위원회 소집 등 학대자 징계, 종사자 및 수급자 재교육, 학대 재발생 예방